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5일, 최형두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형두 의원)

현행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현종)

가.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2008년 9월 시행)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단계별 준공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사업으로, 같은 법에 근거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1단계 시설사업은 2019년 9월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업자 신청에 의한 중간복구 대상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경상남도지사 및 창원시장)에게 복구비 추가 예치 등 불필요한 예산 소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1단계 시설완료 후 장기간 복구가 처리되지 않아 주변 산지 경관을 해치고 산림훼손 및 산림재해 등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보임.

나. 검토의견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역의 산업 기반 조성 및 관광·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으로 중간복구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미 조성이 완료된 구역도 산림 훼손 상태로 방치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활용도 및 지역 주민의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는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장기적인 산림 환경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